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및 지자체와의 공동 대비·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234호, 2025. 12. 23. 공포, 2026. 6. 24. 시행)됨에 따라,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공동격리의 대상 요건·방법·절차 등을 규정하여 과도한 격리 조치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의적 해석에 의한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.

또한,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수집·관리·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예방접종 효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고 서로 연계하여 통합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하며,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연계가능 목록에 장사정보시스템을 추가하여 사망에 대한 보완적 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자료 연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8 및 제1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8(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 및 기능) ①법 제8조의7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(이하 “협의기구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기구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)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.

③ 협의기구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교육부, 법무부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보건복지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 해양수산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농촌진흥청, 질병관리청, 산림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[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장성급(將星級) 장교를 포함한다] 중에서 지명하는 자

2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

④ 협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·의결한다.

1.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에 관한 사항
 2.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비·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협의기구의 구성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
- 제1조의9(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관련성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적위원 중 출석 대상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한다.
- ② 회의는 출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협의기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협의기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- ⑤ 협의기구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.

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서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”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.

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

제21조의4제2항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과평가에 관한 자료

제22조의3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과평가에 관한 자료

제22조의3제3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 별표 2 제1호가목1) 중 “격리한다”를 “격리(동일한 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)한다”로 하고, 같은 목 2) 단서 중 “곤란할”을 “곤란한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2호가목1) 중 “공동 격리”를 “격리”로 하며, 같은 표 제3호가목1) 중 “격리할”을 “격리(동일한 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

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)할”로 한다.

부 칙

다. 공동격리의 절차

- 1) 시·군·구청장은 공동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·도지사에 공동격리 개시 여부를 보고하고, 해당 시설의 장에게 통지한다.
- 2) 시·군·구청장은 개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공동격리를 즉시 종료하여야 하며, 종료 사실을 시·도지사에 보고하고, 해당 시설의 장에게 통지한다.
- 3) 시·군·구청장의 보고·통지 절차는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.
- 4) 시·도지사 및 시·군·구청장은 공동 격리 개시 및 해제의 필요성과 적법성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.

별표 2 제3호가목1)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공동격리의 절차는 입원치료의 공동격리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.

별표 2 제4호가목1) 중 “공동 격리”를 “격리”로 하고, 같은 표 제5호가목

1) 중 “격리할”을 “격리(동일한 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)할”로 하며, 같은 1)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공동격리의 절차는 입원치료의 공동격리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의8 및 제1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제1조의8(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 및 기능) ①법 제8조의7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(이하 “협의기구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협의기구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)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. ③ 협의기구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1. 교육부, 법무부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보건복지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 해양수산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농촌진흥청, 질병관리청, 산림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[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장성급(將星級) 장교를 포함한다] 중에서 지명		

<신 설>

하는 자
2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
④ 협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·의결한다.
1.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에 관한 사항
2.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비·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협의기구의 구성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
제1조의9(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관련성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적위원 중 출석 대상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한다.
② 회의는 출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	③ 협의기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④ 협의기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 ⑤ 협의기구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.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.		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~ 3. (생략) ②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·1의2. (생략) <신설> 1의3. (생략) 2.·3. (생략) 제22조의3(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) ① (생략) ② 법 제40조의5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 1. ~ 3. (생략) <신설> 4. ~ 6. (생략) ③ 법 제40조의5제3항제7호에	인정보”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 1.·1의2. (현행과 같음) 1의3.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과평가에 관한 자료 1의4. (현행 제1호의3과 같음) 2.·3. (현행과 같음) 제22조의3(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과평가에 관한 자료 4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-----
제21조의4(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) ①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	제21조의4(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) ①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서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			

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	-----
시스템”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	-----
시스템을 말한다.	-----.
1. ~ 11. (생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12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
	33조의2에 따른 장사정보시스
	템
12. (생략)	13. (현행 제12호와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	
연락처	(043) 719 - 7130